

의안번호	제769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 기금 조례 부칙	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 기금 조례 부칙
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이 조 례는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효 력을 가진다. ② (생   략)	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----- 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 ○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배 덕 기